

#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#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23. . .  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사업추진 일관성을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정책과정에 주민의사의 반영으로 예산낭비 억제, 배분의 공정성, 책임예산의 실현,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

## 2. 주요내용

가.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 임기 개정(안 제11조제2항)

- (현행) 연임할 수 없다. → (개정)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나.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신설(안 제20조제3항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
다. 합 의 :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##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를 “구미시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시에”를 “구미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하되,”를 “하되, 1회에 한하여”로, “없다”를 “있다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시민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예산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<u>구미시(이하 "시"라 한다)</u> 의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보장, 주민생활의 개선, 재정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<br>-----<br>----- <u>구미시</u>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주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br>1. <u>시에</u>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<br><br>2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조(정의) -----<br>-----<br>-----.<br><br>1. <u>구미시(이하"시"라 한다)</u> 에 -----<br><br>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1조(위원의 위촉·해촉과 임기) ① (생략)<br>② 위원 임기는 2년으로 <u>하</u><br><u>되</u> , 연임할 수 <u>없다</u> .<br><br>③·④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1조(위원의 위촉·해촉과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----- <u>하</u><br><u>되, 1회에 한하여</u> -----<br>----- <u>있다</u> .<br>③·④ (현행과 같음) |
| 제12조(위원장 등) ① (생략)<br><br>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및 위원회를 대표하고,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2조(위원장 등) ① (현행과 같음)<br><br>② -----<br>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 
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 
대행하며, 시민위원회의 사무를  
처리하는 간사는 예산재정과장  
으로 한다.

③ (생 략)

제20조(재정 및 실무지원) ① · ②

(생 략)

<신 설>

-----  
-----  
----- 위원회 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재정 및 실무지원) ① · ②

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예산학교 운영의 활  
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 
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
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위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증감액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### 3. 미첨부 사유

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을 위해 예상되는 민간위탁 비용이 연평균  
13,500천원 정도임

(지원액 : '20년 15,000천원, '21년 13,500천원, '22년 13,500천원)

### 4. 작성자

예산재정과 지방행정주사보 정성민

| 소 관 부 서     |       | 예산재정과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입<br>안<br>자 | 과 장   | 정 윤 호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팀 장   | 진 현 우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자 | 정 성 민<br>(480-2552) |